

대구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3497(본소), 2020나3503(반소)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5. 12.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2647(본소),

2019가단4131(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88,49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피고(선정당사자 겸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와 선정자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6. 4.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선정자 D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4. 22. 접수 제44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5,654,000원과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3.부터, 나머지 14,165,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6.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07. 8. 17. 400만 원, 2008. 2. 29.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여의 합계 1,4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2. 1. 22. 액면금 6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지급받아 결제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

따라서 8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원금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는 2016. 4. 14.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을 사돈관계인 선정자 D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지분을 선정자 D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선정자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9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2007. 8. 17. 400만 원, 2008. 2. 29. 1,000만 원의 합계 1,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갑 9, 10호증, 을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이자를 월 1.5%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9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2012. 1. 22. 피고로부터 600만 원 및 위 대여금에 대한 2012. 1. 22.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

23.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2012. 1. 22.자 600만 원 이외에도 2009. 3. 12.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7. 9.

18.부터 2011. 7. 22. 사이에 합계 73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100만 원(1,400만 원-2009. 3. 12.자 600만 원-2012. 1. 22.자 600만 원-이자초과지급액 300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 22. 6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2007. 9.

18.부터 2011. 7. 22.까지 별지2 총당액 계산표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총 73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9호증, 을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합계 1,370만 원(600만 원+700만 원)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가 정한 법정변제총당 순서에 따라 별지 총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총당하면, 마지막 변제일인 2012.

1. 22. 변제한 600만 원은 먼저 이자로 752,914원(= 205,845원+547,069원)이 총당되고, 원금으로 5,247,086원(= 1,434,539원+3,812,547원)이 총당되어, 이 사건 대여금은

7,188,499원(= 1,965,317원+5,223,182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2. 1. 23.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3) 한편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의 위임을 받은 B에게 교부한 600만 원 당좌수표(E)가 2009. 3. 12. 원고의 어머니인 B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었으므로, 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제1심 법원의 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600만 원 당좌수표(E)가 2009. 3. 12. 원고의 어머니인 B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와 B가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복잡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피고가 B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517)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이 사건 대여금 1,4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해 2012. 1. 22.경

액면금 600만 원인 어음을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당시 피고는 2009. 3.경 어음으로

변제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사정들만으로 위 600만 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충당되고 남은 대여금 원금 7,188,499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2.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6. 4. 22.자로 2016.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선정자 D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대여금 원금 7,188,4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9. 5. 21.자 답변서에서 ‘신용회복 문제로 선정자 D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의 위 진술을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B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0.부터 2004. 12. 30.까지는 월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대구고등법원 2014나4249 대여금등 사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이거나 무자력상태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총당액 계산표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총 1,37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도 2009. 3. 12. 6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보다 100만 원을 초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1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과 변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B가 남편인 H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되자, 위와 같이 재산분할을 하게 된 이유가 피고가 B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그 손해배상 명목으로 2007. 6. 13.부터 2011. 7. 5.까지 사이에 50회에 걸쳐 B를 통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공금관리용 통장에서 14,165,000원을 피고 몰래 인출하여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14,165,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와 H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된 사실, B가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21,127,320원을 공탁한 사실, B 명의의 F은행 계좌(G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에게 상당한 금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B가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복잡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피고 측에서 B에 대하여 2006. 8.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G의 사업용 계좌인 B 명의 F은행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B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영애, 판사 서범준, 판사 박치봉

선 정 자 명 단

1. C

2. D

끝.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아파트 K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8층 아파트

지층 1165.38㎡

1층 1216.29㎡

2층 1177.77㎡

3층 1177.77㎡

4층 1177.77㎡

5층 1177.77㎡

6층 1177.77㎡

7층 1177.77㎡

8층 1177.77㎡

9층 1177.77㎡

10층 1177.77㎡

11층 1177.77㎡

12층 1177.77㎡

13층 1177.77㎡

14층 1177.77㎡

15층 1177.77㎡

16층 1177.77㎡

17층 1177.77㎡

18층 1177.7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달서구 1 대 29016.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8층 L호 철근콘크리트조 134.9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9016.7분의 61.7125. 끝.

<별지 2>

충 당 액 계 산 표

※ 채권 정보

채권발생일	채권액(원)	최초 기산일	연 이율(%)	적용시기	적용 법규
2007.08.17	4,000,000원	2007.08.17	12	2007.08.17	이자제한법
2008.02.29	10,000,000원	2008.02.29	12	2008.02.29	이자제한법

※ 총당 정보

변제일	변제액	원금(원)	적용 이율 (%)	시작일	종료일	발생 이자	이자 중당	원금 충당	원금 잔액	이자 잔액
2007.09.18	40,000원	4,000,000 10,000,000	12.00 12.00	2007.08.17 -	2007.09.18 2007.09.18	43,278 0	40,000 0	0 0	4,000,000 10,000,000 0	3,278 0
2007.10.16	40,000원	4,000,000 10,000,000	12.00 12.00	2007.09.19 -	2007.10.16 2007.10.16	36,721 0	39,999 0	1 0	3,999,999 10,000,000 0	0 0
2007.11.15	40,000원	3,999,999 10,000,000	12.00 12.00	2007.10.17 -	2007.11.15 2007.11.15	39,344 0	39,344 0	656 0	3,999,343 10,000,000 0	0 0
2007.12.17	120,000 원	3,999,343 10,000,000	12.00 12.00	2007.11.16 -	2007.12.17 2007.12.17	41,960 0	41,960 0	78,040 0	3,921,303 10,000,000 0	0 0
2008.01.16	120,000 원	3,921,303 10,000,000	12.00 12.00	2007.12.18 -	2008.01.16 2008.01.16	38,570 0	38,570 0	81,430 0	3,839,873 10,000,000 0	0 0
2008.02.19	120,000 원	3,839,873 10,000,000	12.00 12.00	2008.01.17 -	2008.02.19 2008.02.19	42,805 0	42,805 0	77,195 0	3,762,678 10,000,000 0	0 0
2008.03.17	120,000 원	3,762,678 10,000,000	12.00 12.00	2008.02.20 2008.02.29	2008.03.17 2008.03.17	33,308 59,016	33,308 59,016	7,567 20,109	3,755,111 9,979,891	0 0
2008.04.17	12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8.03.18 2008.03.18	2008.04.17 2008.04.17	38,271 101,712	32,808 87,192	0 0	3,755,111 9,979,891	5,463 14,520
2008.05.16	12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8.04.18 2008.04.18	2008.05.16 2008.05.16	35,802 95,150	32,807 87,193	0 0	3,755,111 9,979,891	8,458 22,477
2008.06.19	12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8.05.17 2008.05.17	2008.06.19 2008.06.19	41,974 111,556	32,808 87,192	0 0	3,755,111 9,979,891	17,624 46,841
2008.07.15	12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8.06.20 2008.06.20	2008.07.15 2008.07.15	32,098 85,307	32,807 87,193	0 0	3,755,111 9,979,891	16,915 44,955
2008.08.23	12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8.07.16 2008.07.16	2008.08.23 2008.08.23	48,147 127,961	32,807 87,193	0 0	3,755,111 9,979,891	32,255 85,723
2008.09.19	12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8.08.24 2008.08.24	2008.09.19 2008.09.19	33,333 88,588	32,808 87,192	0 0	3,755,111 9,979,891	32,780 87,119
2008.10.16	15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8.09.20 2008.09.20	2008.10.16 2008.10.16	33,333 88,588	41,010 108,990	0 0	3,755,111 9,979,891	25,103 66,717
2008.11.14	150,000	3,755,111	12.00	2008.10.17	2008.11.14	35,802	41,009	0	3,755,111	19,896

	원	9,979,891	12.00	2008.10.17	2008.11.14	95,150	108,991	0	9,979,891	52,876
2008.12.16	15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8.11.15 2008.11.15	2008.12.16 2008.12.16	39,505 104,993	41,010 108,990	0 0	3,755,111 9,979,891	18,391 48,879
2009.01.14	12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8.12.17 2008.12.17	2009.01.14 2009.01.14	35,802 95,150	32,807 87,193	0 0	3,755,111 9,979,891	21,386 56,836
2009.02.14	12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9.01.15 2009.01.15	2009.02.14 2009.02.14	38,271 101,712	32,808 87,192	0 0	3,755,111 9,979,891	26,849 71,356
2009.03.18	12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9.02.15 2009.02.15	2009.03.18 2009.03.18	39,505 104,993	32,808 87,192	0 0	3,755,111 9,979,891	33,546 89,157
2009.04.16	12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9.03.19 2009.03.19	2009.04.16 2009.04.16	35,802 95,150	32,807 87,193	0 0	3,755,111 9,979,891	36,541 97,114
2009.05.16	14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9.04.17 2009.04.17	2009.05.16 2009.05.16	37,036 98,431	38,276 101,724	0 0	3,755,111 9,979,891	35,301 93,821
2009.06.13	15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9.05.17 2009.05.17	2009.06.13 2009.06.13	34,567 91,869	41,009 108,991	0 0	3,755,111 9,979,891	28,859 76,699
2009.07.15	14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9.06.14 2009.06.14	2009.07.15 2009.07.15	39,505 104,993	38,275 101,725	0 0	3,755,111 9,979,891	30,089 79,967
2009.08.21	14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9.07.16 2009.07.16	2009.08.21 2009.08.21	45,678 121,399	38,276 101,724	0 0	3,755,111 9,979,891	37,491 99,642
2009.09.17	14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9.08.22 2009.08.22	2009.09.17 2009.09.17	33,333 88,588	38,275 101,725	0 0	3,755,111 9,979,891	32,549 86,505
2009.10.19	14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9.09.18 2009.09.18	2009.10.19 2009.10.19	39,505 104,993	38,276 101,724	0 0	3,755,111 9,979,891	33,778 89,774
2009.11.13	14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9.10.20 2009.10.20	2009.11.13 2009.11.13	30,863 82,026	38,275 101,725	0 0	3,755,111 9,979,891	26,366 70,075
2009.12.14	14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9.11.14 2009.11.14	2009.12.14 2009.12.14	38,271 101,712	38,275 101,725	0 0	3,755,111 9,979,891	26,362 70,062
2010.01.18	21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09.12.15 2009.12.15	2010.01.18 2010.01.18	43,209 114,837	57,413 152,587	0 0	3,755,111 9,979,891	12,158 32,312
2010.02.11	210,000 원	3,755,111 9,979,891	12.00 12.00	2010.01.19 2010.01.19	2010.02.11 2010.02.11	29,629 78,745	41,787 111,057	15,626 41,530	3,739,485 9,938,361	0 0
2010.03.22	210,000 원	3,739,485 9,938,361	12.00 12.00	2010.02.12 2010.02.12	2010.03.22 2010.03.22	47,947 127,428	47,947 127,428	9,466 25,159	3,730,019 9,913,202	0 0
2010.04.19	210,000 원	3,730,019 9,913,202	12.00 12.00	2010.03.23 2010.03.23	2010.04.19 2010.04.19	34,336 91,255	34,336 91,255	23,077 61,332	3,706,942 9,851,870	0 0
2010.05.19	210,000 원	3,706,942 9,851,870	12.00 12.00	2010.04.20 2010.04.20	2010.05.19 2010.05.19	36,561 97,169	36,561 97,169	20,852 55,418	3,686,090 9,796,452	0 0
2010.06.19	210,000 원	3,686,090 9,796,452	12.00 12.00	2010.05.20 2010.05.20	2010.06.19 2010.06.19	37,567 99,843	37,567 99,843	19,846 52,744	3,666,244 9,743,708	0 0
2010.07.18	210,000 원	3,666,244 9,743,708	12.00 12.00	2010.06.20 2010.06.20	2010.07.18 2010.07.18	34,954 92,898	34,954 92,898	22,459 59,689	3,643,785 9,684,019	0 0
2010.08.16	210,000 원	3,643,785 9,684,019	12.00 12.00	2010.07.19 2010.07.19	2010.08.16 2010.08.16	34,740 92,329	34,740 92,329	22,673 60,258	3,621,112 9,623,761	0 0
2010.09.13	210,000 원	3,621,112 9,623,761	12.00 12.00	2010.08.17 2010.08.17	2010.09.13 2010.09.13	33,334 88,591	33,334 88,591	24,079 63,996	3,597,033 9,559,765	0 0
2010.10.14	210,000 원	3,597,033 9,559,765	12.00 12.00	2010.09.14 2010.09.14	2010.10.14 2010.10.14	36,660 97,431	36,660 97,431	20,753 55,156	3,576,280 9,504,609	0 0

2010.11.12	210,000 원	3,576,280 9,504,609	12.00 12.00	2010.10.15 2010.10.15	2010.11.12 2010.11.12	34,097 90,619	34,097 90,619	23,316 61,968	3,552,964 9,442,641	0 0
2010.12.13	210,000 원	3,552,964 9,442,641	12.00 12.00	2010.11.13 2010.11.13	2010.12.13 2010.12.13	36,211 96,237	36,211 96,237	21,203 56,349	3,531,761 9,386,292	0 0
2011.01.15	210,000 원	3,531,761 9,386,292	12.00 12.00	2010.12.14 2010.12.14	2011.01.15 2011.01.15	38,317 101,834	38,317 101,834	19,097 50,752	3,512,664 9,335,540	0 0
2011.02.22	210,000 원	3,512,664 9,335,540	12.00 12.00	2011.01.16 2011.01.16	2011.02.22 2011.02.22	43,884 116,630	43,884 116,630	13,529 35,957	3,499,135 9,299,583	0 0
2011.03.15	210,000 원	3,499,135 9,299,583	12.00 12.00	2011.02.23 2011.02.23	2011.03.15 2011.03.15	24,158 64,205	24,158 64,205	33,255 88,382	3,465,880 9,211,201	0 0
2011.04.18	210,000 원	3,465,880 9,211,201	12.00 12.00	2011.03.16 2011.03.16	2011.04.18 2011.04.18	38,636 102,682	38,636 102,682	18,777 49,905	3,447,103 9,161,296	0 0
2011.05.18	210,000 원	3,447,103 9,161,296	12.00 12.00	2011.04.19 2011.04.19	2011.05.18 2011.05.18	33,905 90,111	33,905 90,111	23,508 62,476	3,423,595 9,098,820	0 0
2011.06.17	210,000 원	3,423,595 9,098,820	12.00 12.00	2011.05.19 2011.05.19	2011.06.17 2011.06.17	33,674 89,496	33,674 89,496	23,739 63,091	3,399,856 9,035,729	0 0
2011.07.22	140,000 원	3,399,856 9,035,729	12.00 12.00	2011.06.18 2011.06.18	2011.07.22 2011.07.22	39,014 103,688	38,275 101,725	0 0	3,399,856 9,035,729	739 1,963
2012.01.22	6,000.00 0원	3,399,856 9,035,729	12.00 12.00	2011.07.23 2011.07.23	2012.01.22 2012.01.22	205,106 545,106	205,845 547,069	1,434,539 3,812,547	1,965,317 5,223,182	0 0

※ 발생이자 계산근거

변제일	계산 근거
2007.09.18	$4,000,000 \times \{0.12 \times (33 + 366)\}$ 【 2007.08.17 ~ 2007.09.18 (12%) 】 0【변제일이 최초 기산일에 미도달】
2007.10.16	$4,000,000 \times \{0.12 \times (28 + 366)\}$ 【 2007.09.19 ~ 2007.10.16 (12%) 】 0【변제일이 최초 기산일에 미도달】
2007.11.15	$3,999,999 \times \{0.12 \times (30 + 366)\}$ 【 2007.10.17 ~ 2007.11.15 (12%) 】 0【변제일이 최초 기산일에 미도달】
2007.12.17	$3,999,343 \times \{0.12 \times (32 + 366)\}$ 【 2007.11.16 ~ 2007.12.17 (12%) 】 0【변제일이 최초 기산일에 미도달】
2008.01.16	$3,921,303 \times \{0.12 \times (30 + 366)\}$ 【 2007.12.18 ~ 2008.01.16 (12%) 】 0【변제일이 최초 기산일에 미도달】
2008.02.19	$3,839,873 \times \{0.12 \times (34 + 366)\}$ 【 2008.01.17 ~ 2008.02.19 (12%) 】 0【변제일이 최초 기산일에 미도달】
2008.03.17	$3,762,678 \times \{0.12 \times (27 + 366)\}$ 【 2008.02.20 ~ 2008.03.17 (12%) 】 $10,000,000 \times \{0.12 \times (18 + 366)\}$ 【2008.02.29~2008.03.17(12%)】
2008.04.17	$3,755,111 \times \{0.12 \times (31 + 365)\}$ 【 2008.03.18 ~ 2008.04.17 (12%) 】 $9,979,891 \times \{0.12 \times (31 + 365)\}$ 【2008.03.18~2008.04.17(12%)】
2008.05.16	$3,755,111 \times \{0.12 \times (29 + 365)\}$ 【 2008.04.18 ~ 2008.05.16 (12%) 】 $9,979,891 \times \{0.12 \times (29 + 365)\}$ 【2008.04.18~2008.05.16(12%)】
2008.06.19	$3,755,111 \times \{0.12 \times (34 + 365)\}$ 【 2008.05.17 ~ 2008.06.19 (12%) 】 $9,979,891 \times \{0.12 \times (34 + 365)\}$ 【2008.05.17~2008.06.19(12%)】

2008.07.15	$3,755,111 \times \{0.12 \times (26 + 365)\}$ 【 2008.06.20 ~ 2008.07.15 (12%) 】 $9,979,891 \times \{0.12 \times (26 + 365)\}$ 【2008.06.20~2008.07.15(12%)】
2008.08.23	$3,755,111 \times \{0.12 \times (39 + 365)\}$ 【 2008.07.16 ~ 2008.08.23 (12%) 】 $9,979,891 \times \{0.12 \times (39 + 365)\}$ 【2008.07.16~2008.08.23(12%)】
2008.09.19	$3,755,111 \times \{0.12 \times (27 + 365)\}$ 【 2008.08.24 ~ 2008.09.19 (12%) 】 $9,979,891 \times \{0.12 \times (27 + 365)\}$ 【2008.08.24~2008.09.19(12%)】
2008.10.16	$3,755,111 \times \{0.12 \times (27 + 365)\}$ 【 2008.09.20 ~ 2008.10.16 (12%) 】 $9,979,891 \times \{0.12 \times (27 + 365)\}$ 【2008.09.20~2008.10.16(12%)】
2008.11.14	$3,755,111 \times \{0.12 \times (29 + 365)\}$ 【 2008.10.17 ~ 2008.11.14 (12%) 】 $9,979,891 \times \{0.12 \times (29 + 365)\}$ 【2008.10.17~2008.11.14(12%)】
2008.12.16	$3,755,111 \times \{0.12 \times (32 + 365)\}$ 【 2008.11.15 ~ 2008.12.16 (12%) 】 $9,979,891 \times \{0.12 \times (32 + 365)\}$ 【2008.11.15~2008.12.16(12%)】
2009.01.14	$3,755,111 \times \{0.12 \times (29 + 365)\}$ 【 2008.12.17 ~ 2009.01.14 (12%) 】 $9,979,891 \times \{0.12 \times (29 + 365)\}$ 【2008.12.17~2009.01.14(12%)】
2009.02.14	$3,755,111 \times \{0.12 \times (31 + 365)\}$ 【 2009.01.15 ~ 2009.02.14 (12%) 】 $9,979,891 \times \{0.12 \times (31 + 365)\}$ 【2009.01.15~2009.02.14(12%)】
2009.03.18	$3,755,111 \times \{0.12 \times (32 + 365)\}$ 【 2009.02.15 ~ 2009.03.18 (12%) 】 $9,979,891 \times \{0.12 \times (32 + 365)\}$ 【2009.02.15~2009.03.18(12%)】
2009.04.16	$3,755,111 \times \{0.12 \times (29 + 365)\}$ 【 2009.03.19 ~ 2009.04.16 (12%) 】 $9,979,891 \times \{0.12 \times (29 + 365)\}$ 【2009.03.19~2009.04.16(12%)】
2009.05.16	$3,755,111 \times \{0.12 \times (30 + 365)\}$ 【 2009.04.17 ~ 2009.05.16 (12%) 】 $9,979,891 \times \{0.12 \times (30 + 365)\}$ 【2009.04.17~2009.05.16(12%)】
2009.06.13	$3,755,111 \times \{0.12 \times (28 + 365)\}$ 【 2009.05.17 ~ 2009.06.13 (12%) 】 $9,979,891 \times \{0.12 \times (28 + 365)\}$ 【2009.05.17~2009.06.13(12%)】
2009.07.15	$3,755,111 \times \{0.12 \times (32 + 365)\}$ 【 2009.06.14 ~ 2009.07.15 (12%) 】 $9,979,891 \times \{0.12 \times (32 + 365)\}$ 【2009.06.14~2009.07.15(12%)】
2009.08.21	$3,755,111 \times \{0.12 \times (37 + 365)\}$ 【 2009.07.16 ~ 2009.08.21 (12%) 】 $9,979,891 \times \{0.12 \times (37 + 365)\}$ 【2009.07.16~2009.08.21(12%)】
2009.09.17	$3,755,111 \times \{0.12 \times (27 + 365)\}$ 【 2009.08.22 ~ 2009.09.17 (12%) 】 $9,979,891 \times \{0.12 \times (27 + 365)\}$ 【2009.08.22~2009.09.17(12%)】
2009.10.19	$3,755,111 \times \{0.12 \times (32 + 365)\}$ 【 2009.09.18 ~ 2009.10.19 (12%) 】 $9,979,891 \times \{0.12 \times (32 + 365)\}$ 【2009.09.18~2009.10.19(12%)】
2009.11.13	$3,755,111 \times \{0.12 \times (25 + 365)\}$ 【 2009.10.20 ~ 2009.11.13 (12%) 】 $9,979,891 \times \{0.12 \times (25 + 365)\}$ 【2009.10.20~2009.11.13(12%)】
2009.12.14	$3,755,111 \times \{0.12 \times (31 + 365)\}$ 【 2009.11.14 ~ 2009.12.14 (12%) 】 $9,979,891 \times \{0.12 \times (31 + 365)\}$ 【2009.11.14~2009.12.14(12%)】
2010.01.18	$3,755,111 \times \{0.12 \times (35 + 365)\}$ 【 2009.12.15 ~ 2010.01.18 (12%) 】 $9,979,891 \times \{0.12 \times (35 + 365)\}$ 【2009.12.15~2010.01.18(12%)】
2010.02.11	$3,755,111 \times \{0.12 \times (24 + 365)\}$ 【 2010.01.19 ~ 2010.02.11 (12%) 】 $9,979,891 \times \{0.12 \times (24 + 365)\}$ 【2010.01.19~2010.02.11(12%)】
2010.03.22	$3,739,485 \times \{0.12 \times (39 + 365)\}$ 【 2010.02.12 ~ 2010.03.22 (12%) 】 $9,938,361 \times \{0.12 \times (39 + 365)\}$ 【2010.02.12~2010.03.22(12%)】
2010.04.19	$3,730,019 \times \{0.12 \times (28 + 365)\}$ 【 2010.03.23 ~ 2010.04.19 (12%) 】 $9,913,202 \times \{0.12 \times (28 + 365)\}$ 【2010.03.23~2010.04.19(12%)】

2010.05.19	$3,706,942 \times \{0.12 \times (30 + 365)\}$ 【 2010.04.20 ~ 2010.05.19 (12%) 】 $9,851,870 \times \{0.12 \times (30 + 365)\}$ 【2010.04.20~2010.05.19(12%)】
2010.06.19	$3,686,090 \times \{0.12 \times (31 + 365)\}$ 【 2010.05.20 ~ 2010.06.19 (12%) 】 $9,796,452 \times \{0.12 \times (31 + 365)\}$ 【2010.05.20~2010.06.19(12%)】
2010.07.18	$3,666,244 \times \{0.12 \times (29 + 365)\}$ 【 2010.06.20 ~ 2010.07.18 (12%) 】 $9,743,708 \times \{0.12 \times (29 + 365)\}$ 【2010.06.20~2010.07.18(12%)】
2010.08.16	$3,643,785 \times \{0.12 \times (29 + 365)\}$ 【 2010.07.19 ~ 2010.08.16 (12%) 】 $9,684,019 \times \{0.12 \times (29 + 365)\}$ 【2010.07.19~2010.08.16(12%)】
2010.09.13	$3,621,112 \times \{0.12 \times (28 + 365)\}$ 【 2010.08.17 ~ 2010.09.13 (12%) 】 $9,623,761 \times \{0.12 \times (28 + 365)\}$ 【2010.08.17~2010.09.13(12%)】
2010.10.14	$3,597,033 \times \{0.12 \times (31 + 365)\}$ 【 2010.09.14 ~ 2010.10.14 (12%) 】 $9,559,765 \times \{0.12 \times (31 + 365)\}$ 【2010.09.14~2010.10.14(12%)】
2010.11.12	$3,576,280 \times \{0.12 \times (29 + 365)\}$ 【 2010.10.15 ~ 2010.11.12 (12%) 】 $9,504,609 \times \{0.12 \times (29 + 365)\}$ 【2010.10.15~2010.11.12(12%)】
2010.12.13	$3,552,964 \times \{0.12 \times (31 + 365)\}$ 【 2010.11.13 ~ 2010.12.13 (12%) 】 $9,442,641 \times \{0.12 \times (31 + 365)\}$ 【2010.11.13~2010.12.13(12%)】
2011.01.15	$3,531,761 \times \{0.12 \times (33 + 365)\}$ 【 2010.12.14 ~ 2011.01.15 (12%) 】 $9,386,292 \times \{0.12 \times (33 + 365)\}$ 【2010.12.14~2011.01.15(12%)】
2011.02.22	$3,512,664 \times \{0.12 \times (38 + 365)\}$ 【 2011.01.16 ~ 2011.02.22 (12%) 】 $9,335,540 \times \{0.12 \times (38 + 365)\}$ 【2011.01.16~2011.02.22(12%)】
2011.03.15	$3,499,135 \times \{0.12 \times (21 + 365)\}$ 【 2011.02.23 ~ 2011.03.15 (12%) 】 $9,299,583 \times \{0.12 \times (21 + 365)\}$ 【2011.02.23~2011.03.15(12%)】
2011.04.18	$3,465,880 \times \{0.12 \times (34 + 366)\}$ 【 2011.03.16 ~ 2011.04.18 (12%) 】 $9,211,201 \times \{0.12 \times (34 + 366)\}$ 【2011.03.16~2011.04.18(12%)】
2011.05.18	$3,447,103 \times \{0.12 \times (30 + 366)\}$ 【 2011.04.19 ~ 2011.05.18 (12%) 】 $9,161,296 \times \{0.12 \times (30 + 366)\}$ 【2011.04.19~2011.05.18(12%)】
2011.06.17	$3,423,595 \times \{0.12 \times (30 + 366)\}$ 【 2011.05.19 ~ 2011.06.17 (12%) 】 $9,098,820 \times \{0.12 \times (30 + 366)\}$ 【2011.05.19~2011.06.17(12%)】
2011.07.22	$3,399,856 \times \{0.12 \times (35 + 366)\}$ 【 2011.06.18 ~ 2011.07.22 (12%) 】 $9,035,729 \times \{0.12 \times (35 + 366)\}$ 【2011.06.18~2011.07.22(12%)】
2012.01.22	$3,399,856 \times \{0.12 \times (184 + 366)\}$ 【 2011.07.23 ~ 2012.01.22 (12%) 】 $9,035,729 \times \{0.12 \times (184 + 366)\}$ 【2011.07.23~2012.01.22(12%)】

